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2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 안 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전체회의 상정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8122	부승찬의원	2025. 2. 13.	2025. 9. 2.
	2209588	유용원의원	2025. 4. 4.	

나.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방위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업체들의 방위산업 분야 참여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정 또는 민간자금출자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재정을 수반하는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특히,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개발과 생산에 고액의 초기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은 현재 「군인사법」에 근거하여 군복무자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하나로 운영중이나, 「군인사법」 제2조는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역 군인이 아닌 사람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 있는 현 실태와 부합하지 않음.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나. 국방사업관리자 자격증의 근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마련하고,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자격 취지를 고려하여 자격증의 명칭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법률 제 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자금융자)”를 “(금융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산업체등에 대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③ 제1항제3호의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사업관리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운영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관리사 자격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자금융자) ① 정부는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방산업체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의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12조(금융지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에 대하여----------.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산업체등 및 그 밖에 방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

	업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방위력개선 및 전력운영·유지 등 사업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위사업관리사 자격 관리·운영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제3호의 자격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